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체육회 인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체육회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1의3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본회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직장생활의 이미지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와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민생활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 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 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팀장이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대한체육회장, 광역시장 도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4. 남양주시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 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직원 징계 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직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칙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 위 정 도 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 위 정 도 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 위 정 도 가 심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 위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 위 정 도 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 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임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음주운전							
1) 면허정지(0.05%~0.10%미만)1회						○	
2) 면허정지(0.05%~0.10%미만)2회						○	
3) 면허정지(0.05%~0.10%미만)3회				○			
4) 면허취소(0.10%이상)1회						○	
5)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						○	
6)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			
7) 면허취소(0.10%이상)2회				○			
8) 면허취소(0.10%이상)3회		○					
9)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0) 운전직원의 면허정지 1회				○			
11) 운전직원의 면허정지 2회		○					
12)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13) 음주운전 사고 후 도 주(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상일 때						○	
	피해자가 중상일 때						○	
2) 교통사고 후 도주 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3)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 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근무시간 중인 경우						○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그 밖의 근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수					○			
4) 성희롱, 간통						○		
타. 성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 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시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						○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 • 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 치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 •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 • 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 • 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소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를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별표 1의3]

징계부과금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p>※ 비고</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련)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 상 감독자	차 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2	1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1	2	3	4
	1	2	3	
○ 단독행위	1	2		

*1,2,3,4 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

(제4조 관련)

제2조 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한글) (한자)

2.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해당 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비위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4조 해당 상벌 유무 및 감경 비위 여부

가. 제4조 제1항 해당 공적 및 징계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4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관인)